

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
교육위원회 보고자료

모두가 행복한
혁신미래교육

주요업무보고

2018. 2.

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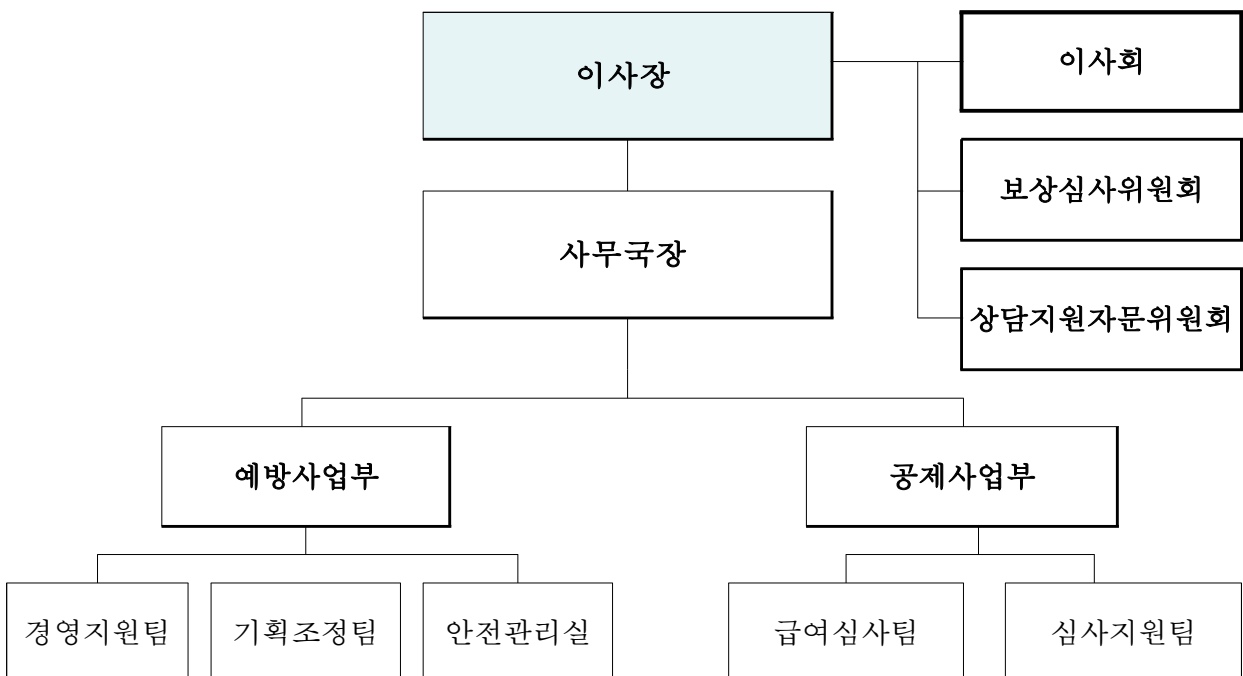
일반 현황

연혁

날 짜	내 용
1987. 12. 9.	「민법」에 의한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설립
1988. 3. 1.	보상업무 개시
2007. 8. 31.	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해산
2007. 9. 1.	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
2007. 9. 3.	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법인 설립등기
2012. 4. 1.	학교폭력피해 지원 개시
2015. 1. 20.	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 신설
2016. 9. 1.	여행자공제사업 개시

조직 및 정·현원

○ 조직



○ 정·현원 ('18.1.31. 현재)

- 특정직 및 일반직

구분	특정직	일 반 직				계
	3급	5급	6~7급	8~9급	소계	
정원	1	2	5	7	14	15
현원	1	1	4	9	14	15

- 계약직

구분	실장	과장	팀장	대리	주임	사원	계
정원	1	4	5	5	6	2	23
현원	1	3	4	5	4	0	17

□ 임원 현황

- 이사장: 김형태 (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, 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)
- 임 기: 3년 ('16.9.1. ~ '19.8.31.)
- 구성현황

구분	학교장	학부모	교수	공무원	변호사	전문의	회계사	기타	계
이사	8	2	1	1	1	1		1	15
감사				1			1		2
계	8	2	1	2	1	1	1	1	17

- 임원명단 (소속은 임명 당시를 기준으로 함)

연번	구분	성명	직위	소속	비고
1	이사장	김형태	대표	교육을 바꾸는 새힘	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
2	이사	황지현	원장	서울진관유치원	서울시교육청 장학사
3	〃	유정옥	교장	서울도성초등학교	서울시교육청 장학사
4	〃	강희창	교장	경희초등학교	한국 중고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
5	〃	서종일	교장	이수중학교	서울국공립중학교교장회 회장
6	〃	이희철	교장	경신중학교	한국중등축구연맹 이사
7	〃	박건호	교장	경기고등학교	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
8	〃	조형래	교장	배명고등학교	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
9	〃	심규학	교장	서울정애학교	서울시교육청 장학관
10	〃	이주선	학부모	성신여자중학교	성신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
11	〃	김영애	학부모	서울도봉초등학교	도봉구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활동가
12	〃	손준호	변호사	법률사무소 휴먼	서울시 공익변호사단, 노동권리보호관
13	〃	김덕원	전문의	녹색병원	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
14	〃	김영근	교수	고려대학교	한국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
15	〃	백종대	교육행정국장	서울시교육청	공무원
1	감사	장원택	공인회계사	안세회계법인	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
2	〃	엄동환	정책감사팀장	서울시교육청	공무원

□ 보상심사위원 현황

- 위원장: 이길환 (교육재정과장)
- 임 기: 2년 ('17.9.19. ~ '19.9.18.)
- 구성현황

구분	학교장	학부모	교수	공무원	변호사	전문의	보험전문가	계
인원	3	2	1	2	2	2	3	15

- 위원명단 (소속은 임명 당시를 기준으로 함)

연번	구분	성명	직위	소속	비고
1	위원장	이길환	교육재정과장	서울시교육청	
2	위원	이일순	교장	서울불암초등학교	
3	〃	서종일	교장	이수중학교	
4	〃	임지혜	학부모	잠실여자고등학교	학부모 대표
5	〃	박용식	변호사	세계법무법인	변호사
6	〃	김윤수	전문의	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	전문의
7	〃	고 용	전문의	한양대국제병원	전문의
8	〃	최철규	대표	서중손해사정법인	보험전문가
9	〃	박상선	대표	라인업손해사정법인	보험전문가
10	〃	강효선	대표	화승손해사정법인	보험전문가
11	〃	승영길	공무원(퇴직)	전(前)고덕평생학습관장	
12	〃	김정희	교장	문래중학교	
13	〃	장경희	학부모	서울문래초등학교	학부모 대표
14	〃	김영근	부교수	고려대학교	교수
15	〃	정현실	변호사	서울시교육청	변호사

□ 공제급여 지급 현황

○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(단위: 건, 천원)

구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교육	외국인	기타	계	전년대비 증감율	
2012	건수	640	3,780	3,632	2,850	67	32	10	18	11,029	-
	금액	59,232	1,159,762	1,750,903	1,406,222	45,959	14,344	857	3,926	4,441,205	-
2013	건수	725	3,774	3,865	2,917	65	35	14	32	11,427	3.6%
	금액	67,035	1,077,019	2,352,165	2,426,103	26,281	134,274	7,998	13,471	6,104,346	37.4%
2014	건수	1,026	4,347	4,506	3,437	124	25	16	20	13,501	18.1%
	금액	100,143	1,683,590	1,917,063	2,841,416	37,738	29,853	8,506	6,135	6,624,444	8.5%
2015	건수	1,080	4,305	4,339	3,577	95	27	8	27	13,458	△0.3%
	금액	99,278	945,155	1,871,357	1,751,840	23,375	11,672	1,234	8,830	4,712,741	△28.9%
2016	건수	997	4,378	3,919	3,360	80	22	8	19	12,783	△5.0%
	금액	352,159	1,405,546	1,362,424	1,646,869	19,283	5,742	1,008	9,036	4,802,067	1.9%
2017	건수	1,008	4,319	3,948	3,175	72	28	11	24	12,585	△1.5%
	금액	224,293	1,265,547	1,383,803	2,346,297	73,430	41,403	3,164	6,260	5,344,197	11%

○ 2017년도 공제급여 지급 세부 현황

- 총괄 현황

구분	2017년	2016년	비고
건수	12,585건	12,783건	198건(1.5%) 감소
금액	53억4천만원	48억원	5억4천만원(11%) 증가

- 시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(단위: 건, ' 17.1.1.~12.31.)

구 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학교	외국인	기타학교	계
체육수업	101	1,178	1,571	1,297	12	3	2	10	4,174
실험실습	1	25	22	40	1	1	-		90
교과수업	435	349	239	127	18	7	-	3	1,178
청소시간	5	18	17	30	-	-	-	-	70
휴식시간	148	1,697	1,250	720	19	4	4	8	3,850
방과후시간	245	673	701	816	10	9	4	3	2,461
기 타	73	379	148	145	12	4	1	-	762
계	1,008	4,319	3,948	3,175	72	28	11	24	12,585

- 장소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(단위: 건, ' 17.1.1.~12.31.)

구 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학교	외국인	기타학교	계
교 실	514	943	522	334	18	12	-	10	2,353
운동장	145	1,313	1,744	1,505	13	8	7	4	4,739
체육관	109	763	818	730	5	-	3	4	2,432
계 단	34	438	267	184	7	2	-	5	937
복 도	81	557	327	135	10	5	-	-	1,115
기 타	125	305	270	287	19	1	1	1	1,009
계	1,008	4,319	3,948	3,175	72	28	11	24	12,585

- 유형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

(단위: 건, ' 17.1.1.~12.31.)

구 분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	평생학교	외국인	기타학교	계
사 망	-	1	-	-	1	-	-	-	2
장 해	1	4	10	21	-	1	-	-	37
골 절	85	1,082	1,147	672	12	9	1	5	3,013
열 상	535	1,216	666	528	27	2	3	7	2,984
관절염좌	128	691	790	999	12	12	7	7	2,646
기 타	259	1,325	1,335	955	20	4	-	5	3,903
계	1,008	4,319	3,948	3,154	72	28	11	24	12,585

□ 예산현황

(단위: 천원, '18.1.31. 현재)

세부사업	2018년도	2017년도		증감 (A-B)	증감율 (%)
	본예산(A)	본예산(B)	최종예산		
공제급여	5,883,000	5,617,000	5,617,000	266,000	4.7
소송 및 의료자문료	145,800	145,800	145,800	0	0
보상심사위원회	30,400	30,400	30,400	0	0
예방사업비	678,000	207,800	207,800	470,200	226.3
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당지원비	160,020	167,580	167,580	Δ7,560	Δ4.5
학교폭력피해지원	120,460	120,460	120,460	0	0
급여	884,029	789,733	789,733	94,296	11.9
수당	187,196	139,736	139,736	47,460	34.0
업무추진비	33,600	30,000	30,000	3,600	12.0
일반운영비	441,979	365,807	365,807	76,172	20.8
차기이월금	7,456,225	10,185,342	10,185,342	Δ2,729,117	Δ26.8
계	16,020,709	17,799,658	17,799,658	Δ1,778,949	Δ10.0



운영방향

-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, 여행자공제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하고,
-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,
- 학교폭력 피해 지원으로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과 함께 학교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,
-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·연구·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·교육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여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정착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.



주요업무 내역



(단위: 천원, '18.1.31.현재)

번호	주요업무명	예산액		집행계획				쪽수
		'18	'17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
1	공제급여 지급	5,883,000	5,617,000	(연중)				11
2	소송 및 의료자문	145,800	145,800	36,450	36,450	36,450	36,450	13
3	보상심사위원회 운영	30,400	30,400	7,600	7,600	7,600	7,600	15
4	공제회 홍보 및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	143,000	107,500	63,000	20,000	40,000	20,000	17
5	여행자공제사업	5,000	5,000	1,250	1,250	1,250	1,250	19
6	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	160,020	167,580	(연중)				21
7	학교폭력피해지원	120,460	120,460	(연중)				23

1 공제급여 지급

□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
 -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
- 사업근거
 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8조
 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- 사업내용
 - 지원대상: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
 - 지원범위: 요양급여, 장해급여, 간병급여, 유족급여, 장의비

□ 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요양급여	연중	12,300건
장해급여	"	17건
간병급여	"	2건
유족급여	"	2건
위로금	"	1건

□ 추진 계획

- 요양급여
 -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. 다만, 법원의 판결 등으로 「국민건강 보험법」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

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 부담

○ 장해급여

-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

○ 간병급여

-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

○ 유족급여

-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

○ 장의비

-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

추진 일정

- ' 18.1~12월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8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8	'17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공제급여 지급	5,883,000	5,617,000	5,883,000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			
계	5,883,000	5,617,000	5,883,000			

2 소송 및 의료자문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
- 학교안전공제의 운영 등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, 시행령 제21조, 시행규칙 제7조(비용의 보전)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지원대상: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, 명예학교안전요원,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자
- 지원범위: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손해방지경감비용, 변호사선임료	연중	매월 5건
송무활동비	"	매월 10건
공제급여관련 법률, 의료, 손해사정자문 등	"	매월 5건

추진 계획

- 손해방지경감비용, 변호사선임료

-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·경감비용 및 긴급 조치비용
-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
-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·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
- 송무활동비
 - 공제급여의 지급, 보전비용의 지급 등과 관련한 소송 수행
- 공제급여관련 법률, 의료, 손해사정자문 등
 - 공제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법률·의료·손해사정 등의 자문

추진 일정

- ' 18.1~12월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8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8	'17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소송 및 의료자문	145,800	145,800	36,450 월20건예상	36,450 월20건예상	36,450 월20건예상	36,450 월20건예상
계	145,800	145,800	36,450	36,450	36,450	36,450

3 보상심사위원회 운영

사업 개요

- 사업목적
 -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를 심리·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통하여 피공제자 및 청구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
- 사업근거
 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 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(보상심사위원회)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	연중	8회 개최

추진 계획

- 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결정 기간 준수
 -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,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- 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개최
 - 심사청구에 따른 문서 수발 및 회의 진행

추진 일정

- ' 18.1~12월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□ 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8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8	'17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보상심사위원회	30,400	30,400	7,600 2회 개최	7,600 2회 개최	7,600 2회 개최	7,600 2회 개최
계	30,400	30,400	7,600	7,600	7,600	7,600

4

공제회 홍보 및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교안전공제회 사업 및 기관을 홍보함으로써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설립 취지를 알리고 제도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피공제자의 권익보호를 실현함
-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
-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실현가능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대상: 각급학교, 학부모,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교육계 언론사
- 방법: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게재, 홍보물 배포, 각종 자격·직무·교장단·행정실장 연수 시 공제제도 및 사업 홍보,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책자 제작·배송

○ 기존실적

- 2017년: 학교안전공제제도 책자 17만부 제작·배송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교육언론사 지면 광고 의뢰	연중	4회

홍보 물품 제작 계획 수립 및 실행	연중	수회
학교안전공제제도 책자 배포	'18.3.	18만부

추진 계획

- 언론사 지면 광고 게재
 - 수익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 도모
- 기관 홍보 물품 제작
 - 학교안전에 관련된 물품 제작 및 배포를 통하여 학교안전문화의 정착과 기관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꾀함
-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
 - 공제회 주요사업 안내
 - 학교안전공제 가입 및 신청절차 안내

추진 일정

- ' 18.2월: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책자 제작 계획 수립 및 내용 확정, 업체 선정 및 계약
- ' 18.3월: 책자 제작 완료 및 배부
- ' 18.1~12월: 언론사 지면 광고 게재, 학사일정별 수요자 중심 홍보 계획 실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8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8	'17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학교안전공제 제도 안내	63,000	59,500	63,000 사업 진행	0 사업 완료	0 성과 확인	0 성과 정리
공제회 사업 및 기관홍보	80,000	48,000	0 계획 수립	20,000 계획 실행	40,000 경과 확인	20,000 성과 확인
계	143,000	107,500	63,000	20,000	40,000	20,000

5

여행자공제사업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실현하기 위함
-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 행정업무 부담 경감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대상: 각급학교, 교육청 및 관련 기관
- 방법: 여행자공제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·정산·보상 업무 원스탑 업무 플랫폼 구축

○ 기존실적

- 2017년: 2,016건 계약 체결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사업 홍보 강화	연중	
여행자공제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선	"	

추진 계획

○ 여행자공제사업 홍보 강화

-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 및 반성을 기초로 학교, 학부모

등 수요자 중심으로 홍보 계획을 다변화함

- 여행자공제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선
 -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운영

추진 일정

- '18.1~12월: 연중 수시 청약 접수, 사고 보상 및 사업 홍보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8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8	'17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여행자공제	5,000	5,000	1,250 홍보·계약	1,250 홍보·계약	1,250 홍보·계약	1,250 홍보·계약
계	5,000	5,000	1,250	1,250	1,250	1,250

6

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전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

○ 사업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

○ 사업내용

- 대상: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, 그 가족
- 방법: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, 지원기간의 연장 등 심의

□ 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	연중	6회 개최
지원 신청에 따른 심의	"	매월 10건 (예상)
상담지원 비용 지급 등 수행	"	"

□ 추진 계획

○ 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
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

○ 지원신청에 따른 심의

- 지원신청, 기간연장신청 등에 대한 심의 진행

○ 상담지원 비용 지급 등

- 지원대상 선정에 따라 발생된 비용 지급 업무 수행

추진 일정

- ' 18.1~12월: 자문위원회 6회 개최
- ' 18.1~12월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8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8	'17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상담지원비	160,020	167,580		160,020		
				(연중)		
계	160,020	167,580		160,020		

7

학교폭력피해지원

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

-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,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기여함

○ 사업근거
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(기금의 용도)

○ 사업내용

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
-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

추진 목표

세부사업명	추진시기	물량
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급	연중	50건
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지급	"	50건
소송 등 구상 업무 수행	"	10회
법률 자문 수행	"	12회

추진 계획

- 심리상담 및 조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지급
 -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이행하는 비용 지원

○ 구상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수행

- 피해학생에게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를 위한 법률 자문 의뢰

추진 일정

- ' 18.1~12월: 연중수시 접수, 심사 및 지급

예산 집행 계획

(단위: 천원, '18.1.31.현재)

사업명	예산액		집행액 / 집행내용			
	'18	'17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피해지원	120,460	120,460			120,460 (연중)	
계	120,460	120,460			120,460	